

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6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10. 12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10. 13 제8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특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조규식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공설묘지가 설치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「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」를 「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」로
- 시용자의 자격(안 제3조)
- 매장 분묘의 기본면적 6.75m²(안 제5조)
- 분묘의 구조형태 조정(안 제6조)
- 묘지사용 기본기간 15년 단위로 한다(안 제11조)
- 사용료 규정(안 제13조)
- 운영위원회는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(안 제22조)
- 묘역내 금지행위 규정(안 제2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「장사등에관한법률」이 개정되고 또한 우리군 공설 묘지가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

기존의 「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」를 「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」로 제명을 바꾸는등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.

- 우리군의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사용자의 자격기준·묘지면적·분묘의 구조·사용기간·사용료·위탁운영·관리사무소 설치·운영위원회 기능과 구성·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.
- 입법의 목적·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
 1. 묘지기간을 15년 3회연장 가능토록 규정한 이유?
 2. 읍면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?
 3. 인력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 있는지? 등을

충분히 살펴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묘지사용기간을 15년으로한 특별한 이유는?	○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.
○ 묘지사용 순서는?	○ 하단부부터 설치할 계획이며 규칙 사항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○ 장례시설의 사용료는 15년동안임?	○ 15년동안 사용료임.
○ 사용자에 대한 위치변경에 대한 대책은?	○ 어느 위치에도 좋다고 판단되나 하단부부터 할것인가 아니면 상단부부터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부. 끝 .